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01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서미화・오세희・홍기원

허성무 · 김영환 · 김주영

안태준 • 박지원 • 김예지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 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 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 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7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③ 학대받은 장애인이 제2항에 따른 인도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학대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를 학대받은 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⑨ 제3항에 따른 분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의19제2항 중 "제59조의7제7항"을 "제59조의7제8항"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5 중 "제59조의7제6항"을 "제59조의7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학대받은 장애인이 제2항에
	따른 인도조치를 거부하는 경
	우 학대현장에 출동한 사법경
	찰관리는 학대행위자를 학대받
	은 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대행위자 분리
	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
	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의 기
	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
	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u>있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	<u>⑤</u> 제4항
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	
<u>⑤</u> <u>제3항</u> 에 따라 조사 또는 질	<u>⑥</u> 제4항

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 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 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 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⑥</u>·<u>⑦</u> (생 략)

<신 설>

8 <u>제7항</u>의 신분조회 등 필요 한 조치의 요청 절차 · 범위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 제 템) ① (생 략)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u>⑦・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른 분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
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
<u>야 한다.</u>
⑩ 제8항
세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
템) ① (현행과 같음)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6조(벌칙)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u>제3항</u> 또 는 <u>제5항</u>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 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 3. (생략)
- ④·⑤ (생 략)
- 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4. (생 략)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 7. (생 략)

④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u>제59조의7제7항</u>
3의6.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